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524
----------	-------

발의연월일 : 2026. 6. 26.

발 의 자 : 이달희 · 서천호 · 유용원
박형수 · 김위상 · 박충권
김예지 · 김정재 · 이진숙
김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직업교육훈련, 경력단절 예방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반도체 · 이차전지 · 인공지능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여성인력 양성과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임.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해당 분야에서의 여성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특히 첨단전략산업이 집적된 지역별로 산업구조와 인력수요가 상이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여성 대상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첨단전략산업의 여성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지역 맞춤형 여성 인재 양성을 촉진하
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첨단전략산업 교육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첨단전략산업(「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여성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첨단전략산업의 여성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하여 지역의 산업구조 및 인력수요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3조의2(첨단전략산업 교육 등)</u></p> <p><u>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첨단전략산업(「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여성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u></p> <p><u>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첨단전략산업의 여성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하여 지역의 산업구조 및 인력수요 등 지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u></p> <p><u>③ 성평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p>